

☎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/ 보험급여팀장 백영기 [6581]/ 팀원 문성현 [6587]/E-mail: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7100호

시행일자 2018. 9. 7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‘향정신성 약물’ 오남용 관리를 위한 ‘처방일수’ 심사 강화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현재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졸피뎀(Zolpidem) 성분 등 향정신성약물(경구용)을 대상으로 [일반원칙]향정신성 약물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8호, ‘18.2.1)에 따라 1회 처방 시 ‘투여일수’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, 환자안전 투약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, 18년 하반기에 [일반원칙] ‘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-127호, ‘13.9.1)’에 따라 동일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의 「6개월 간」향정신성 약물의 처방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추가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하고 있는바, 관련 내용을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님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대상성분 : 일반원칙 「향정신성약물」 중, 대상성분

Alprazolam, Bromazepam, lorazepam, Chlordiazepoxide, Clobazam, Clorazepate Clotiazepam, Diazepam, Ethyl loflazepate, Etizolam, Flunitrazepam, Flurazepam, Lorazepam, Mexazolam, Midazolam, Triazolam, Zolpidem

○ 적용일자:

- 사전안내 실시: ‘18년 9월~11월
- 심사 실제적용: ‘18년 12월 예정

○ 문의전화: (033)739-2145, 2146, 2144, 2141

붙임 :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